

열정과 혁신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주)웹코엔지니어링

수 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예산과
참 조

제 목: 「G밸리근로자문화복지센터건립공사」 선급금(2회) 신청 검토보고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선금의 지급) 2(선금 지급대상)

나. 예강 G밸리 2020-11-17-01호(2020.11.17.) 2회 선금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회신건

다. CM단 공문(PC G밸리 제201117-04, 선급금(2회) 신청 검토보고

라. 예강 G밸리-2020-12-08-02(20.12.08) 2회 선금신청에 재보고 건

3. 상기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선급금(2회) 신청서를 제출받아 불임과 같이 검토하고 보고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검토서 1부.

2) 시공사 공문사본(예강 G밸리 2020-12-08-02) 1부. 끝.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김 현 동



수신처 :

담당 이 종 서

전 결

(시행) PC G밸리 제201208-02호 (2020.12.08.)

우 08589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테크타워 A동 707호 / <http://www.pemcomcm.com>

Tel 070-4733-4082 Fax 070-4733-4079

공개/비공개

기술검토 의견서

공 사 명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설공사 사업단
문서번호	기검(건)201208-02호
수 신	도시기반시설본부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자체 제시 <input type="checkbox"/> 발주처 요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공사 제출 <input type="checkbox"/> 시공사 요구	<input type="checkbox"/> 설계도서 <input type="checkbox"/> 시공상세도 <input type="checkbox"/> 설계변경 <input type="checkbox"/> 시공계획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제 목	선급금(2회) 신청 및 사용계획서 적정성 검토.	공 종

1. 검토 목적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재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소기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선급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2. 검토 근거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선금의 지급)의 2(선금 지급대상).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3. 검토 내용

① 공정을 검토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공 종	계약 금액	공정율	선금금액	지급율	검토결과
건축	4,306,267	0%	880,000	20.44%	기지급
		9.96%	550,000	12.77%	적정
	누계	9.96%	1,430,000	33.20%	적정

② (건축) 선급금 검토

(단위:천원/부가세포함)

예정금액	산출근거	지급율	선금금액	조정사유
3,164,993	계약-직노	27.80%	880,000	기지급
1,856,191	계약-직노-1차기성-1차선급	29.63%	550,000	자재비 적기지급

- 계약금액(건축) : 4,306,267

- 1회 기성 : 428,802

- 직접노무비 : 1,141,274

- 1회 선급금 : 880,000

③ 선급금(2회) 사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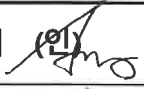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 분	공 종	자재비	선급금 금액	지급율	사용처
하도급	철근콘크리트공사	68,999	45,000	65.22%	유로폼자재
	조적,미장	216,742	75,400	34.78%	방수,타일 자재
	수장공사	329,630	54,100	16.41%	단열재
	외장,유리공사	727,340	326,100	44.83%	박판세라믹
	금속,창호공사	331,414	49,400	14.91%	창호자재
소계			550,000		

5. 검토결과

- 1)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자재확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급 사용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2) 선금사용계획에 따라 하도급업체 선금지급여부등 하도급관리 철저를 기하겠음.
- 3) 지급받은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에 즉시 응할 것을 약서로 제출됨.
- 4) 선금에 대한 보증서발급 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며 선금신청에 대한 발주처 승인직후 시공사 발급 예정임.

첨부 : 1. 선금사용계획서 1부.
2. 공사원가계산서(건축)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2 월 08 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이 종 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김 현 등 

#첨부 1.

[공종별 사용계획 세부사항]

구분	사 용 계 획						비고
	품 목	내 역	A.원도급 자재비(원)	B.예정금액(원)	비율(%) B/A	사용예정 일	
철근콘크리트공사	선금	지제이건설(주)	68,999,556	45,000,000	65.22	20.12.10.	유로 폼자 재
조적미장방수공사	선금	(주)피비솔	216,742,174	75,400,000	34.79	20.12.10.	방수, 타일 자재
수장공사	선금	업체 협의중	329,630,271	54,100,000	16.41	20.12.10.	단열 자재
외장,유리공사	선금	업체 협의중	727,340,128	326,100,000	44.83	20.12.10.	박판 세라 믹
금속,창호공사	선금	(주)지엘산업	331,414,495	49,400,000	14.91	20.12.10.	창호 자재
합 계			1,674,126,624	550,000,000			

공사원가계산서 (건축)

공사명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구분	분	당초금액(A)	변경금액(B)	증감금액(C=B-A)	요율	구성비
계	계	1,864,990,369	1,859,920,269	5,070,100	-	
	계			5,070,100	-	
재료비	간접재료비			-	-	
	작업실,부산물등 [소계]	1,864,990,369	1,859,920,269	5,070,100	-	
노무비	직접노무비	1,186,192,999	1,141,274,892	44,918,107	7.30%	직접노무비의
	간접노무비 [소계]	86,592,089	83,313,067	3,279,022	-	
공	운반비	1,272,785,088	1,224,587,959	48,197,129	-	
	기	40,248,773	58,487,944	18,239,171	-	
사	산재보험료	49,638,619	47,758,930	1,879,689	3.90%	노무비의
	고용보험료	11,073,231	10,653,916	419,315	0.87%	노무비의
원	건강보험료	20,165,281	22,829,632	2,664,351	1.70%	간접비 원상복구(공고문)=총차-1차
	연금보험료	29,536,206	33,438,696	3,902,490	2.49%	간접비 원상복구(공고문)=총차-1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0,826	1,495,341	174,515	6.55%	간접비 원상복구(공고문)=총차-1차
	퇴직금공채부금비	27,282,439	26,249,322	1,033,117	2.30%	직접노무비의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129,975	78,946,080	6,816,105	1.97%	간접비 원상복구(공고문)=총차-1차
	⑨ 일반경우 ⑩의 1.2배 ⑩) 도급자관급액 포함	60,108,312	65,788,399	5,680,087	1.97%	간접비 원상복구(공고문)=총차-1차
가	관경보전비	15,457,160	15,298,415	158,745	0.50%	(직제+직노+기계경비)
	안전관리비	24,673,267	24,673,267	-	-	
비	기타경비	152,182,110	149,598,649	2,583,461	4.85%	(재료비+노무비)
	[소계]	2,473,146	2,447,746	25,400	0.080%	(직제+직노+기계경비)
계	계	448,345,035	474,019,716	25,674,681	0.070%	(직제+직노+기계경비)
	계	3,586,120,492	3,558,527,944	27,592,548	-	
이	일반관리비	170,340,723	169,030,078	1,310,645	4.75%	계의
	운	129,886,640	128,257,500	1,629,140	6.87%	(노무비+경비+일/관)
이	철타공사 작업부산물(교제)	-	-	-	-	
	안	18,498,035	18,362,831	135,204	0.49%	(순공사비+도급차관급(1.1)-경기안전점검3회및중합모고서작성)
P	S	-	40,609,885	40,609,885	-	
	공	3,904,845,890	3,914,788,238	9,942,348	-	
부	가	390,484,588	391,478,823	994,235	10.00%	공급가액의
	도	4,295,330,478	4,306,267,061	10,936,583	-	
관	급	207,887,440	207,887,440	-	-	
	자	423,267,000	423,267,000	-	-	
이	관	631,154,440	631,154,440	-	-	
	설	4,926,484,918	4,942,421,501	15,936,584	-	
총	공	4,926,484,918	4,942,421,501	15,936,584	-	
	사	-	-	-	-	

예강건설산업주식회사

(우)121-130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0, 3층 02-716-7242 / Fax. 02-716-7243

문서번호 : 예강 G벨리-2020-12-08-02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20. 12. 08.	일자	20.12.08	결재	김재
수신 : G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간	18:11		이동서
참조 : 건설사업관리단장	번호		공람	김재
경유 :	처리과			
	담당자	정석근		
제 목 : “G벨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회 선금신청에 재보고 건				

1. 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예강 G벨리-2020-11-06-01 G벨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회 선금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회신의 건“

3. “G벨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회 선금신청에 재보고 하오니 검토 후 처리 바랍니다.

첨 부 : #01. 선금사용계획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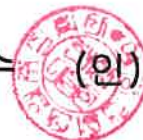
02. 공종별 사용계획 세부사항 1부.

03 선금청구사유서 1부.

04 협약서 1부. 끝.

G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 장 대 리 인 성 광 수 (인)



선금사용계획서

1. 공 사 명 : G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 계약금액(2차분) : 금 사십팔억구천팔백십칠만칠천오백사십이원정(₩4,898,177,542)
3. 선금급청구액 : 일금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 1) 예강건설산업(주) : 일금 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 2) (주)한웅이엔씨 : 일금 영원정 (₩0)
 - 3) (주)국민에코 : 일금 영원정 (₩0)

4. 사용계획 내역:

구분	사 용 계 획					비고
	공 종	사용목적	금액(천원)	사용처	사용예정일	
하 수 급 자	철근콘크리트공사	선금	45,000	지제이건설(주)	2020.12.10.	
	조적,미장,방수공사	선금	75,400	(주)피비솔	2020.12.10.	
	수장공사	선금	54,100	업체 협의 중	2020.12.10.	
	외장,유리공사	선금	326,100	업체 협의중	2020.12.10.	
	금속,창호공사	선금	49,400	(주)지엘산업	2020.12.10.	
합 계			550,000			

※ 선금 수령 후 2020년 12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완료할 예정 임.

※ 선금 승인 통보 후 선급금보증서 7일 이내 제출 예정 임.

첨부 : 1. 공종별 사용계획 세부사항 1부. 끝.

2020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0,3층

예강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영 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3

주식회사 국민에코

대표이사 박 재 호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주식회사 한웅이엔씨

대표이사 김 은 지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첨부 1.

[공종별 사용계획 세부사항]

구분	사 용 계 획						비고
	품 목	내 역	A.원도급 자재비(원)	B.예정금액(원)	비율(% B/A)	사용예정 일	
철근콘크리트공사	선금	지제이건설(주)	68,999,556	45,000,000	65.22	20.12.10.	유로 폼자 재
조적,마장,방수공사	선금	(주)피비솔	216,742,174	75,400,000	34.79	20.12.10.	방수, 타일 자재
수장공사	선금	업체 협의중	329,630,271	54,100,000	16.41	20.12.10.	단열 자재
외장,유리공사	선금	업체 협의중	727,340,128	326,100,000	44.83	20.12.10.	박판 세라 믹
금속,창호공사	선금	(주)지엘산업	331,414,495	49,400,000	14.91	20.12.10.	창호 자재
합 계			1,674,126,624	550,000,000			

선금청구사유서

1. 공 사 명 : G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2. 계약금액(2차분) : 금 사십팔억구천팔백십칠만칠천오백사십이원정(W4,898,177,542)

상기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재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달성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계약기간 내에 목적을 완성코져 2회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0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0,3층
예강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영 자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주식회사 한웅이엔씨
대표이사 김 은 지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3
주식회사 국민에코
대표이사 박 재 호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확 약 서

1. 공 사 명 : G벨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1. 계약금액(2차분) : 금 사십팔억구천팔백십칠만칠천오백사십이원정(₩4,898,177,542)

2. 계약기간(2차분) : 2020. 01. 29. ~2021. 02. 15.

3. 선금급 청구액: 일금 구억구천만원정 (₩550,000,000)

[1차 선금액 : 일금 팔억팔천만원정 (₩880,000,000) - 계약금액의 17.97%]

[2차 선금신청액: 일금 구억구천만원정 (₩550,000,000) - 계약금액의 20.21%]

1) 예강건설산업(주) ; 일금 구억구천만원정(₩550,000,000)

2) (주) 한웅 이앤씨 : 일금 영원정 (₩0)

3) (주) 국 민 에 코 : 일금 영원정 (₩0)

6. 입금 계좌번호

1) 예강건설산업(주) ; 수협 113000547917

2) (주) 한웅 이앤씨 :

3) (주) 국 민 에 코 :

당사는 귀 시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중인 상기 공사에 대하여 지급받는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에 즉시 응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0.3층

예강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영 자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3

주식회사 한웅이앤씨

대표이사 김 은 지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3

주식회사 국민에코

대표이사 박 재 호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C밸리 근로자분회복지센터 건립공사 - 습식공사

구분	세목	인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인도급요율	하도급요율	구성비
순공공사비	직접재료비	216,742,174	147,622,761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216,742,174	147,622,761			
	간접노무비	298,243,726	325,984,841	7.30%		직접노무비의
	소계	21,771,791				
	운반비	320,015,517	325,984,841	7.30%		직접노무비의
	기계경비	9,842,643	72,493,780			
	신세보험료	12,480,605	12,713,409	3.90%	3.90%	노무비의
	고용보험료	2,784,134	2,846,068	0.87%	0.87%	노무비의
	건강보험료	5,070,143	5,541,742	1.70%	1.70%	직접노무비의
	연금보험료	7,426,268	8,117,022	2.49%	2.49%	직접노무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094	362,984	6.55%	6.55%	건강보험료의
	퇴직금공제부담비	6,859,605		2.30%	2.30%	직접노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174,267				
	a) 일반상우	10,145,222		1.97%	1.97%	
b) 8의 1.2배	12,174,267					
c) 도급자 관급액 포함						
환경보전비	2,624,142		1.97%	1.97%		
안전관리비	2,991,523		0.50%	0.50%	(직세+직노+기계경비)	
기타경비	26,032,748		4.85%	4.85%	(재료비+노무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419,862		0.08%		(직세+직노+기계경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67,379	382,271	0.07%	0.07%	(직재+직노+기계경비)	
소계	89,405,412	102,447,276				
계	626,163,103	576,054,878				
일반관리비	29,742,747		4.75%	1.50%	계의	
이윤	30,170,544		6.87%	1.00%	(노무비+경비+일반)	
상급가액	686,076,394	576,000,000				
부가가치세	68,607,639	57,600,000	10%	10%	인수정리 ₩54,878	
총공사비	754,684,033	633,600,000			83.96%	



공종별 집계표(건축)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품명	규격	구분	단위	수량	총자본(설계변경)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010111 미장공사			㎡	1	15,013.303	15,013.303	124,899.758	124,899.758	497.450	497.450	140,410.511	140,410.511		
					변경(B)	15,013.303	15,013.303	124,899.758	124,899.758	497.450	497.450	140,410.511	140,410.511	
					증감(C)		0		0		0		0	0
010112 창호공사			㎡	1	259,091.035	259,091.035	38,890.871	38,890.871	43.568	43.568	298,025.474	298,025.474		
					변경(B)	259,091.035	259,091.035	38,890.871	38,890.871	43.568	43.568	298,025.474	298,025.474	
					증감(C)		0		0		0		0	0
010113 유리공사			㎡	1	104,339.161	104,339.161	26,728.287	26,728.287	0	0	131,067.448	131,067.448		
					변경(B)	104,339.161	104,339.161	26,728.287	26,728.287	0	0	131,067.448	131,067.448	
					증감(C)		0		0		0		0	0
010114 도장공사			㎡	1	29,340.522	29,340.522	38,236.030	38,236.030	10.173	10.173	67,586.725	67,586.725		
					변경(B)	29,340.522	29,340.522	38,236.030	38,236.030	10.173	10.173	67,586.725	67,586.725	
					증감(C)		0		0		0		0	0
010115 수장공사			㎡	1	329,630.271	329,630.271	80,242.900	80,242.900	376.064	376.064	410,249.235	410,249.235		
					변경(B)	329,630.271	329,630.271	80,242.900	80,242.900	376.064	376.064	410,249.235	410,249.235	
					증감(C)		0		0		0		0	0
010116 기타공사			㎡	1	14,845.305	14,845.305	2,493.835	2,493.835	451.126	451.126	17,790.266	17,790.266		
					변경(B)	14,845.305	14,845.305	2,493.835	2,493.835	451.126	451.126	17,790.266	17,790.266	
					증감(C)		0		0		0		0	0
010117 시인공사			㎡	1	43,315.930	43,315.930	0	0	0	0	43,315.930	43,315.930		
					변경(B)	43,315.930	43,315.930	0	0	0	0	43,315.930	43,315.930	
					증감(C)		0		0		0		0	0
010118 콘재비및운반비			㎡	1	11,530.905	11,530.905	0	0	20,347.940	20,347.940	31,878.845	31,878.845		
					변경(B)	11,530.905	11,530.905	0	0	20,347.940	20,347.940	31,878.845	31,878.845	
					증감(C)		0		0		0		0	0
010119 작업부산물(-)			㎡	1	-4,146.584	-4,146.584	0	0	0	0	-4,146.584	-4,146.584		
					변경(B)	-4,146.584	-4,146.584	0	0	0	0	-4,146.584	-4,146.584	
					증감(C)		0		0		0		0	0
[소 계]			㎡	1	1,988,529.236	1,988,529.236	1,489,086.372	1,489,086.372	147,742.780	147,742.780	3,635,358.386	3,635,358.386		
					변경(B)	1,988,529.236	1,988,529.236	1,489,086.372	1,489,086.372	147,742.780	147,742.780	3,635,358.386	3,635,358.386	
					증감(C)		0		0		0		0	0

공종별집계표(건축)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NO	품명	규격	구분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010110 금속공사		당초(A)	식	1	700,102,846	700,102,846	156,681,816	156,681,816	13,086,985	13,086,985	869,871,647	869,871,647	
			변경(B)	식	1	700,102,846	700,102,846	156,681,816	156,681,816	13,086,985	13,086,985	869,871,647	869,871,647	
			중감(C)				-	-	-	-	-	-	-	-
2	010113 유리공사		당초(A)	식	1	104,339,161	104,339,161	26,728,287	26,728,287	-	-	131,067,448	131,067,448	
			변경(B)	식	1	104,339,161	104,339,161	26,728,287	26,728,287	-	-	131,067,448	131,067,448	
			중감(C)				-	-	-	-	-	-	-	-
	소계	금속+유리공사				804,442,007	804,442,007	183,410,103	183,410,103	13,086,985	13,086,985	1,000,939,095	1,000,939,095	
3	금속공사 중복공제분			식	1	77,101,879	77,101,879	70,839,297	70,839,297	1,682,170	1,682,170	149,623,346	149,623,346	
						계	(1+2-3)	727,340,128	727,340,128	112,570,806	112,570,806	11,404,815	11,404,815	851,315,749

공무원기계산서

공사업 : G벨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 금속창호공사

구분	원도금 계약금액	지열산업	원도금요율	지열요율	구성비
순공사비	직접재료비	319,215,000			
	간접재료비	331,414,495			
	[소계]	319,215,000			
	직접노무비	102,842,996	111,734,500		
	간접노무비	7,507,539		7.30%	직접노무비의
	[소계]	110,350,535	111,734,500		
	윤반비				
	기계경비	1,512,887			
	산재보험료	4,303,671	4,167,697	3.90%	3.73% 노무비의
	고용보험료	960,050	972,090	0.87%	0.87% 노무비의
	건강보험료	1,748,331	3,731,932	1.70%	3.34% 직접노무비의
	연금보험료	2,560,790	5,028,052	2.49%	4.50% 직접노무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4,516	382,523	6.55%	10.25% 건강보험료의
	퇴직금공제부금비	2,365,389		2.30%	2.30% 직접노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65,847			
a) 일반경우	8,554,873		1.97%	1.97% (재료비+직노)	
b) a의 1.2배	10,265,847				
c) 도급자 관급액 포함					
환경보전비	2,178,852		1.97%	1.97%	
안전관리비	3,517,486	4,309,495	0.50%	0.50% (직재+직노+기계경비)	
기타경비	21,425,604		4.85%	4.85% (재료비+노무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48,616		0.08%	0.08% (직재+직노+기계경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05,039		0.07%	0.07% (직재+직노+기계경비)	
[소계]	51,607,077	18,591,790			
계	493,372,107	449,541,290			
일반관리비	23,435,175		4.75%	계의	
기업이윤	12,736,484		6.87%	1.00% (노무비+경비+일/관)	
공금기액	529,543,766	449,541,290			
부가가치세	52,954,376	44,954,129	10%	10%	
총공사비	582,498,142	494,000,000		84.81% 단수정리 -495,419	

[시행 2019.10. 8.][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 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 목 차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제1절 총 칙	2
제2절 내역입찰 집행	9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2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2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6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9
제7절 실비 산정	27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30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3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7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7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1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124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150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63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180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201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09
제11장 입찰 유의서	218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34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3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277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299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317
부 칙	32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선금의 지급

제3절 대가의 지급

제4절 사업비의 이월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2)-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

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3) 지급 약속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

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2) 계약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 선금의 정산

-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같음
-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채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4절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다.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다.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교육행정방

계정지원과

URL : http://www.dobu.go.kr

새소식

공지사항

동부교육소식

부서업무방

공지사항

안내자료

예산/행 회고자료

· 학교통합지원센터

· 초등교육지원과

· 중등교육지원과

· 교육협력복지과

· 행정지원과

· 재정지원과

·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시설지원과

업무현신방

교육복지우선지원

행정서비스원장

제목

지방교육청 특성화를 위한 행사 예산금회계별 안내

부서명

재정지원과

작성자

한민준

작성일

2020.09.28

조회

4회

첨부파일

지방교육청 특성화를 위한 행사 예산금회계별 안내

지방교육청 특성화를 위한 행사 예산금회계별 안내에 관하여

이 예산금회계별 설명서에 포함

이 예산금회계별 설명서를

이 예산금회계별 설명서를

이 예산금회계별 설명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최대 80% 선금지급 가능('20.6.2 개정)	공사·용역·물품제조 (제한없음) (시행령개정) 물품구매 '20.12.31. (신청일 기준)
	사용내역 (기존)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을 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20.12.31. (신청일 기준)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주의사항)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 확보 필요

선금 산정 예상 금액

① 2차수 계약금액(건축) : 3,914,788,238 원 (3,914,788,238 원)

② 2차수 1회 기성금액(건축) : 389,820,000원 (389,820,000 원)

③ 2차수 직접노무비(건축) : 1,141,274,892원

④ 기지급 선금금(건축) : 800,000,000원 (800,000,000 원)

⑤ 선금 최대한도(건축) : 80%

가. 선금산정금액(①-②-③) = 2,383,693,346원

나. 선금산정금액 요율적용 (가 * 80%) = 1,906,954,676원

다. 선금산정액(나-④) = 1,106,954,676원